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발의일자 : 2019년 11월 13일
- 나. 발 의 자 : 이규선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0일
- 라. 상정일자 :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19.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규선 의원)

-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안 제4조~제6조)

-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안 제7조)
- 지원 및 관리, 지원중지 등(안 제8조, 제9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정옥)

- 본 건은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와 성매매행위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 안 제4조 ~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 내용, 대상
 -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 및 관리, 지원 중지
 -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성매매피해자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원활하게 복귀하는데 생계유지,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어 있음. 향후 사업의 실효성을 위하여 성매매집결지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의 실태조사,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
----------	-----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일

발의자 : 이규선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안 제4조 ~ 제6조)
- 라.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안 제7조)
- 마. 지원 및 관리, 지원중지 등(안 제8조, 제9조)
- 바.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0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19. 11. 15. ~ 11. 19.)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 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성매매집결지를 말한다.
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탈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지원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5.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 법률, 의료, 주거,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성매매집결지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소장
2.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성매매집결지 전담 상담원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4. 해당업무 담당과장
5. 그 밖에 탈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지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피해자들의 보호 및 치료, 탈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활지원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지역사회 관

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